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311호

「도로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·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66호, '23. 10. 24. 공포, '24. 10. 25. 시행)됨에 따라,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지정·변경 또는 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○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

○ 전자우편 : buyback@korea.kr

○ 팩스 : 044-201-5588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(044-201-39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